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4. 6 선고 2021가단21495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지털

담당변호사 이상현

피 고 E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조상원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선영

변 론 종 결 2022. 3. 15.

판 결 선 고 2022. 4. 6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3/9 지분, 원고 B, C, D에게 각 2/9 지분에 관하여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. 12. 22. 제66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F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의 소유자였다. 그러던 중 F은 2015. 12. 22.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1. 6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 피고는 F의 여동생이다.

나. F은 2021. 1. 27. 사망하였다. 원고 A은 F의 배우자이고, 원고 B, C, D은 F의 자녀들로서 F의 상속인들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

가. 원고들의 주장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 피고가 F으로부터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 뒤 대출을 받아 F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피고와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인바,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,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(1)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

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).

(2) 살피건대, 갑제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고 F이고 다만 그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 오히려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를 전후로 하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, 달리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.

3. 하자 있는 의사표시 주장에 관하여

원고들은, F이 뇌졸중, 인지장애, 치매증상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. 11. 16. 당시 F은 자유로운 의사에게 기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였으므로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제5호증의 1,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. 11. 16. 무렵 F이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방창현

부동산 표시

(1) 토지

성남시 중원구 대 90.5㎡

(2) 건물

성남시 중원구 [도로명 주소] 성남시 중원구

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

1층 53.09㎡, 2층 53.09㎡, 지층 53.09㎡

